

투자 위험 등급 : 4등급[보통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미국달러-파생형]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7년 1월 2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년 2월 16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
| |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
| |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3호에 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의 주요 구성종목인 미국 달러 선물, 관련 ETF 및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국내 채권, 채권형 ETF 및 현금 유동성 자산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달러선물의 만기 교체에 따른 손익은 이 투자신탁에 반영이 되며 환율 변동에 따른 미국달러선물의 손익과 더불어 이 투자신탁 성과의 원천이 됩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환율 변동을 미국달러선물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종하므로, Rollover Effect에 따라 미국달러선물 변동과도 다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선물시장의 이례현상 등으로 인하여 미국달러 환율 성과와 미국달러선물의 성과가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달러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의 수익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국내외 경제상황 및 환율, 통화선물시장의 변동성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13.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는 설정단위(CU: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부금 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납부금을 납부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면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14. 납부금 등은 금전으로만 구성되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자가 합니다. 따라서, 주식 ETF와 같이 실물을 납부금 등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신탁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통화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및 채권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수익자는 직접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또는 부도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환율, 통화 선물시장의 움직임 및 변동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본인의 투자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합니다. 만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끝까지 읽은 후에도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투자위험”을 포함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보

(작성기준일: 2017.01.02)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펀드코드: 99409]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이하 "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특별자산(미국달러-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02-789-03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17년 2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투자신탁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지정참가회사	0.12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20, 신탁업자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25
	기타비용	0.0231
	총보수비용	0.3931
※ 주식사항	<p>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6.01.01 ~ 2016.12.31]</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p>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6.01.01 ~ 2016.12.31]	
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기준 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이하 “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이하 “채권”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하를 투자합니다.
- 여기서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사채권은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미국달러 관련 장내파생상품, 미국달러 및 미국달러 선물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미국달러 선물 또는 미국달러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 그러나 채권, 환율, 선물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동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 총액의 10%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 투자신탁은 일일 정산 또는 수시정산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권리 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기초지수: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

- 미국달러선물지수는 KRX 미국달러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의 가격과 동일하게 연동하는 지수로서 최근월종목 만기 도래시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함으로써 달러선물 가격을 연속성 있게 나타낸 지수입니다.

* 만기(최종거래일)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최근월, 차근월종목이라 합니다.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7년 1월 2일, 1,000pt

- 산출방법: 미국달러선물 최근월종목 가격 사용

$$* F-USDKRW = \frac{\text{비교시점(현재)의 선물금액}}{\text{기준시점의 선물금액}} \times \text{기준지수}$$

* 선물금액: 미국달러선물가격 × 거래승수(1만)

- 결제월물 교체 (Roll-over)

- 최종거래일: 차근월물 가격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거래일: 최근월물(1/3).차근월물(2/3)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 최근월물(2/3).차근월물(1/3) 사용

주1) 미국달러선물 지수 현황은 www.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초지수가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미국달러선물(F-USDKRW) 지수"를 비교지수로 합니다.

3. 수익구조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7.01.02.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재우	1975	팀장	31개(팀공동)	4,876억(팀공동)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01.03~ 2017.01.02	2015.01.03~ 2016.01.02	2014.01.03~ 2015.01.02	2013.01.03~ 2014.01.02	2012.01.03~ 2013.01.02
운용(모)	2011.02.23	3.22	6.06	5.17	-1.26	-7.19
비교지수		2.14	4.75	3.28	-3.20	-9.72

주1) 비교지수: F-USDKRW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누적수익률과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 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음(陰)의 1 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음(陰)의 1 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금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 변동률에 연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할 것을 전제한 투자자는

	<p>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2)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3) 상/하한가 4)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등 5)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와 다른 자산에 투자 6) 다른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정 비율을 투자 <p>또한, 기초지수는 미국달러선물의 증가로 차근월물로 롤오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나, 집합투자업자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증가 전 장중매매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중매매 스프레드(차근월물과 근월물 가격 차이)와 증가로 산출된 스프레드와의 괴리 발생 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초지수 추종위험</p>	<p>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의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

※ 상기의 투자위험 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8.23%),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집합투자업자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1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기초지수는 미국달러선물의 증가로 차근월물로 롤오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나, 집합투자업자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증가 전 장중매매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중매매 스프레드(차근월물과 근월물 가격 차이)와 증가로 산출된 스프레드와의 괴리 발생 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미국달러 선물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1
3. 모집예정금액	1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1
5. 인수에 관한 사항	11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4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4
4. 집합투자업자	1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1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4
1. 재무정보.....	3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5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8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39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0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9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9
[붙임] 용어풀이.....	48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펀드코드: 9940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특별자산(미국달러-파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합니다)(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4)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방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한 청약과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한 요청은 법인투자자/수익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도 그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투자자는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기타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설정단위인 1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 상장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나. 상장일: 2011년 2월 24일

다. 거래방법: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상장요건**

가. 규모요건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나. 유동성 요건

- ①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 ②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③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 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 ①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 ② ①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라. 자산의 구성요건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 ③ 상장지수펀드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마. 존속기한 :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바.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①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 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 ②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사.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합니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제3항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주1)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급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장폐지 요건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기구의 상장을 폐지합니다.

가.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 라.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사.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주1)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2)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급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주3)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펀드코드: 9940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11.02.23	최초 설정
2011.12.12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등
2012.06.19	- 당사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2.12.21	- 투자신탁 회계기간 및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
2013.02.2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채권평가회사 추가 (에프엔자산평가)
2014.01.28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수익자총회 등)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전문인력 : 이강희 → 김승욱,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3.12.20 변경)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 반영 (상장요건, 상장폐지 요건 등)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4.12.18	- 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우리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운용전문인력(2014.12.01. 변경) : 박제우)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10.01) 등
2015.01.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16.05.31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2.16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7.01.02. 현재)

1)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제우	1975	팀장	31개 (팀공동)	4,876억 (팀공동)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미래에셋투신운용 상품개발팀 -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운용팀 -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SI운용팀 - NH-CA 자산운용 SI팀장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ETF팀장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이강희	2011.02. ~ 2013.12.
	김승욱	2013.12. ~ 2014.10.
	김중협	2014.10. ~ 2014.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욱	2011.02. ~ 2013.12.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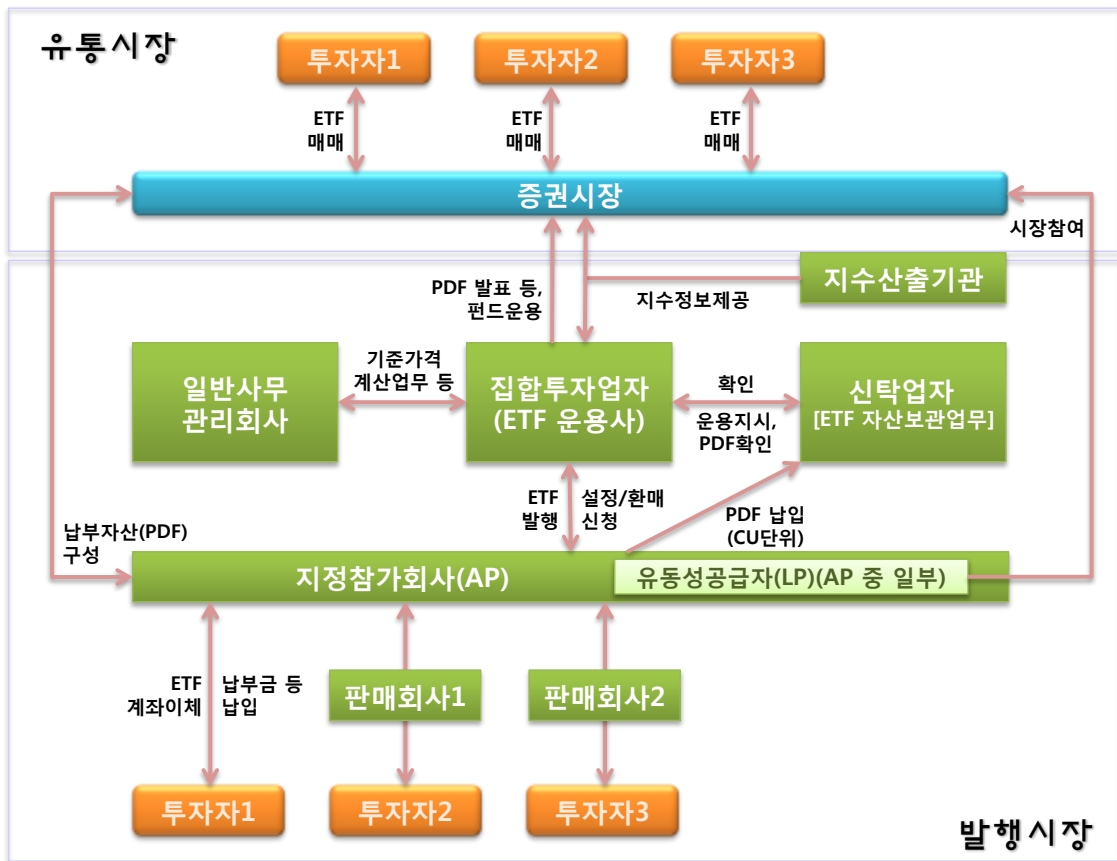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특별자산(미국달러-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연간,%)			
	선취판매	환매	판매(지정참가회사)	운용	신탁	사무관리
제한없음	없음	없음	0.12	0.20	0.025	0.025

▷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투자 과정

-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이를 상장시킨 후 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 발행시장이란, 펀드로서의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합니다.
-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ETF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때 지정참가회사 중에서 ETF의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겸하는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ETF 가격에서 일정 범위 호가 내에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ETF를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이하 “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 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기초지수: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

▷ 미국달러선물지수는 2007년 1월 2일을 1,000P(기준지수)로 하여 KRX 미국달러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의 가격과 동일하게 연동하는 지수로서 최근월종목 만기 도래시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함으로써 달러선물 가격을 연속성 있게 나타낸 지수입니다.

* 만기(최종거래일)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최근월, 차근월종목이라 합니다.

▷ 산출방법: 미국달러선물 최근월종목 가격 사용

$$* F-USDKRW = \frac{\text{비교시점(현재)의 선물금액}}{\text{기준시점의 선물금액}} \times \text{기준지수}$$

선물금액: 미국달러선물가격 × 거래승수(1만)

▷ 결제월물 교체 (Roll-over)

- 최종거래일: 차근월물 가격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거래일: 최근월물(1/3). 차근월물(2/3)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 최근월물(2/3). 차근월물(1/3) 사용

주1) 미국달러선물 지수 현황은 www.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초지수가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인 “미국달러선물(F-USDKRW) 지수”를 비교지수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상황 및 통화관련선물시장의 변동성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장내 파생상품	50%(위험평가액 기준) 초과	법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미국달러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초과로 합니다)
채권	9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 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 총액의 20%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 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p>관한 사항</p>	<p>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24 조제 5 항의 신용등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p>8.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u>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u>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9 호의 2 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u>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투자비율 제한의</p>	<p>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p>

예외	<p>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8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2 호, 제 4 호 내지 제 7 호, 제 9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2 호 및 제 4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 및 법 제 229 조제 1 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④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의 투자대상자산 중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채권에 대한 투자전략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이하 “채권”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하를 투자합니다.
- 여기서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사채권은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②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전략

-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미국달러 관련 장내파생상품, 미국달러 및 미국달러 선물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미국달러 선물 또는 미국달러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 그러나 채권, 환율, 선물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동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 총액의 10%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 투자신탁은 일일 정산 또는 수시정산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권리 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초지수: 미국달러선물지수 (F-USDKRW)

※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초지수가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개요

- ▷ 산출기관: 한국거래소(KRX)
- ▷ 『미국달러선물지수』는 2007년 1월 2일을 1,000P(기준지수)로 하여 KRX 미국달러선물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종목*의 가격과 동일하게 연동하는 지수로서, 최근월종목 만기 도래시 차근월종목*으로 교체함으로써 달러선물 가격을 연속성 있게 나타낸 지수임
 - * 만기(최종거래일)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최근월, 차근월종목이라 합니다.
- ▷ 산출방법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 최근월 종목가격 사용
 - $F-USDKRW = (\text{비교시점[현재]의 선물금액} / \text{기준시점의 선물금액}) \times \text{기준지수}$
 - * 선물금액: 미국달러선물가격 \times 거래승수(1만)
- ▷ 결제월물 교체(Roll-Over)
 - 최종거래일: 차근월물 가격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거래일: 최근월물(1/3), 차근월물(2/3) 사용
 -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 최근월물(2/3), 차근월물(1/3) 사용
- ▷ 기준일(기준지수): 2007.1.2. (1,000 포인트)
- ▷ 산출시간: 9:01~15:15 (미국달러선물시장 중단/정지시 미산출)
- ▷ 산출주기: 10초

④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미국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의 차입등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⑤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1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기초지수는 미국달러선물의 증가로 차근월물로 롤오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나, 집합투자업자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증가 전 장중매매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중매매 스프레드(차근월물과 근월물 가격 차이)와 증가로 산출된 스프레드와의 괴리 발생 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미국달러 선물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키움 KOSEF 미국달러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채권 및 어음이 가지는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무증권 등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자율 상승에 따라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무증권이라 할 지라도 채무증권으로서 가지는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등을 만기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투자 당시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수령 시의 시장 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재투자 수익률이 당초보다 낮아져 채권 투자를 통한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익을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

2)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상장폐지 될 경우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재산은 분배할 것이지만, 잔여재산 분배 시까지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금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금전화하려면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여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환매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가격에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10,000 좌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위험	기초지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합투자업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혹은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혹은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거나 지수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이로 인한 상장 폐지 및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 변동률에 연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할 것을 전제한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2)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3) 상/하한가 4)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등 5)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와 다른 자산에 투자 6) 다른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정 비율을 투자 또한, 기초지수는 미국달러선물의 증가로 차근월물로 롤오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나, 집합투자업자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증가 전 장중매매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중매매 스프레드(차근월물과 근월물 가격 차이)와 증가로 산출된 스프레드와의 괴리 발생 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기준으로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이 최대손실금액이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운용의 효율성 또는 안정성의 제고 및 기타 투자신탁운용상의 다양한 사유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과세상 이익에 합산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운용의 효율성 또는 안정성의 제고 및 기타 투자신탁운용상의 다양한 사유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수익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과세상 이익에 합산하여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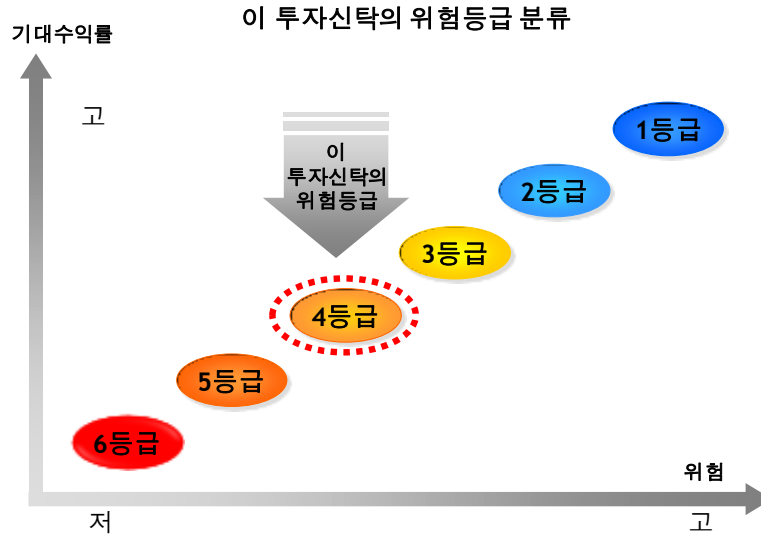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인덱스 바스켓의 구성이 어려워져 지수의 추적이 곤란하거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장거래 위험 (가격괴리 위험등)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투자신탁의 환매가 장기간 제halt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8.23%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특히, 향후 미국달러선물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증권 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부금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1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1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1주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설정단위(Creation Unit, 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납부금등**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산출: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은 전일 증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p>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금전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부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부자산 작성시 반영 등 <p>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p>

④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나.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④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①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구분	T-1	T	T+1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신탁회사로 납부금등 이체(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증권시장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2) 환매

가. 환매방법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① 증권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 법인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환매).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신탁 환매에 관한 사항

-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 취소·업무정지, 기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② 내지 ③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가 ② 내지 ④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⑦ ① 내지 ④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⑤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⑤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⑦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구분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수익자계좌에서 수익 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증권시장 등)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을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 확인

라.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에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에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①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② 아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시: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input type="checkbox"/>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1좌당 기준가격은 최초설정일의 추적대상지수에 지수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해당 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에 동 기준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방문하시어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게시·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⑤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000	매 3 개월 후급(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 지급). 단, 최초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함.
지정참가회사보수	0.1200	
신탁업자보수	0.025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231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3931	-
증권 거래비용	0.1462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6.01.01 ~ 2016.12.31]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6.01.01 ~ 2016.12.31]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0	127	223	507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보수 계산 기간 등

☐ 투자신탁 보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합니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되, 최초보수계산기간은 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② 내지 ③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 ① 최초보수계산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 ② ①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①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3개월간
- ③ 신탁계약 해지시 보수계산기간: ① 또는 ②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가.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제3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과다한 현금 보유로 인한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재산이 보유하는 현금을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 중인 수익자
-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
-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거래소에 공시
- 지급처: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라.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상환금 지급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자: 신탁계약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7월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수익자가 이익을 분배 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후 결산 및 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 및 분배 직후를 의미) 과세 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단, 배당소득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환매시 배당소득금액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매도 및 해지(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환매시 배당소득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실제 매매차익

= 매도 시점의 매도금액 - 매수취득금액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하여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③ 기타 사항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ETF 를 증권시장에서 2 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ETF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합니다.(단, 같은 날 매도되는 ETF 는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

* 이동평균법: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6기 (2016.01.01 ~ 2016.12.31)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5기 (2015.01.01 ~ 2015.12.31)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4기 (2014.01.01 ~ 201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6.12.31)	(2015.12.31)	(2014.12.31)
운용자산	76,821,953,289	34,191,158,307	16,362,068,348
증권	10,565,816,711	18,578,114,601	13,088,567,75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6,256,136,578	15,613,043,706	3,273,500,59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9,213,674	107,251,835	106,258,536
자산총계	77,001,166,963	34,298,410,142	16,468,326,88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79,011,613	480,839,179	312,439,734
부채총계	979,011,613	480,839,179	312,439,734
원본	77,200,560,000	35,102,520,000	17,613,720,000
수익조정금	-4,306,898,594	182,429,487	353,875,968
이익잉여금	3,128,493,944	-1,467,378,524	-1,811,708,818
자본총계	76,022,155,350	33,817,570,963	16,155,887,150

손익계산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6.01.01 ~ 2016.12.31)	(2015.01.01 ~ 2015.12.31)	(2014.01.01 ~ 2014.12.31)
운용수익	7,042,578,641	2,020,401,668	-184,259,995
이자수익	659,029,658	446,383,382	425,524,498
배당수익	130,000,000	34,000,000	50,000,000
매매/평가차익(손)	6,253,548,983	1,540,018,286	-659,784,493
기타수익	5,823,139	2,036,212	1,213,683,437
운용비용	277,577,130	128,766,097	523,157,052
관련회사 보수	198,945,020	92,035,020	490,818,555
매매수수료	78,632,110	36,731,077	32,338,497
기타비용	12,957,374	6,123,880	2,197,799
당기순이익	6,757,867,276	1,887,547,903	504,068,59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6.01.01 ~ 2016.12.31	0.03	338.18	0.08	886.41	0.04	523.91	0.06	760.22
2015.01.01 ~ 2015.12.31	0.01	161.56	0.02	286.15	0.01	123.91	0.03	338.18
2014.01.01 ~ 2014.12.31	0.02	176.75	0.01	91.63	0.01	108.59	0.01	161.5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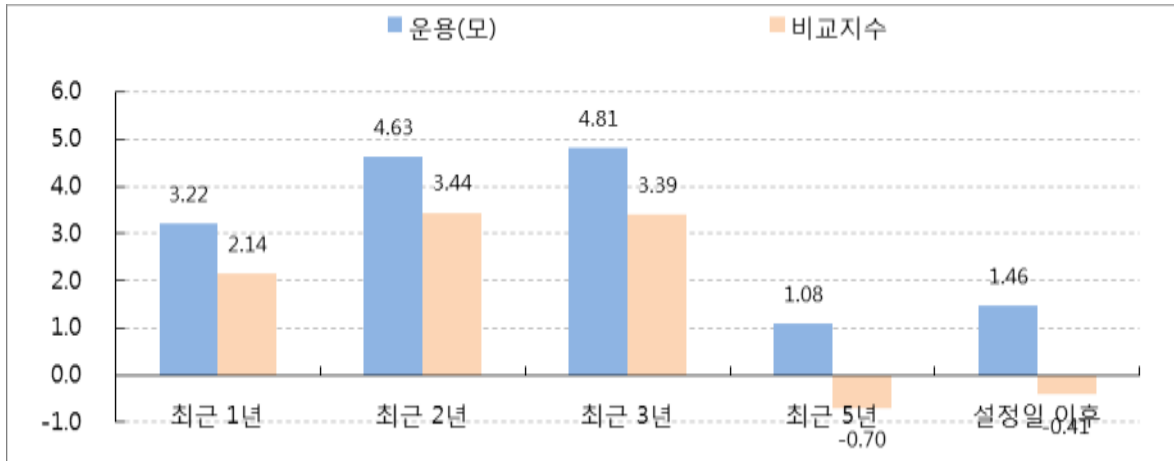
주2) 상기의 좌수는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ETF 1주당 가치)'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6.01.03~ 2017.01.02	2015.01.03~ 2017.01.02	2014.01.03~ 2017.01.02	2012.01.03~ 2017.01.02	설정일~ 2017.01.02
운용(모)	2011.02.23	3.22	4.63	4.81	1.08	1.46
비교지수		2.14	3.44	3.39	-0.70	-0.41

주1) 비교지수: F-USDKRW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01.03~ 2017.01.02	2015.01.03~ 2016.01.02	2014.01.03~ 2015.01.02	2013.01.03~ 2014.01.02	2012.01.03~ 2013.01.02
운용(모)	2011.02.23	3.22	6.06	5.17	-1.26	-7.19
비교지수		2.14	4.75	3.28	-3.20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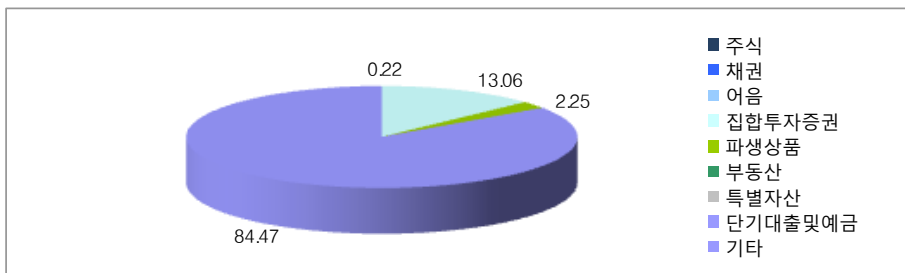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F-USDKRW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6.12.31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0)	0.0 (0.00)	0.0 (0.00)	100.6 (13.06)	17.3 (2.25)	0.0 (0.00)	0.0 (0.00)	0.0 (0.00)	0.0 (0.00)	650.4 (84.47)	1.7 (0.22)	770.0 (100.00)
KRW	0.0 (0.00)	0.0 (0.00)	0.0 (0.00)	100.6 (14.58)	17.3 (2.51)	0.0 (0.00)	0.0 (0.00)	0.0 (0.00)	0.0 (0.00)	570.6 (82.67)	1.7 (0.24)	690.1 (100.00)
USD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79.9 (100.00)	0.0 (0.00)	79.9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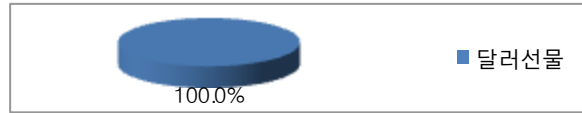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 | | |
|-------------------------|---------|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

[2016.12.31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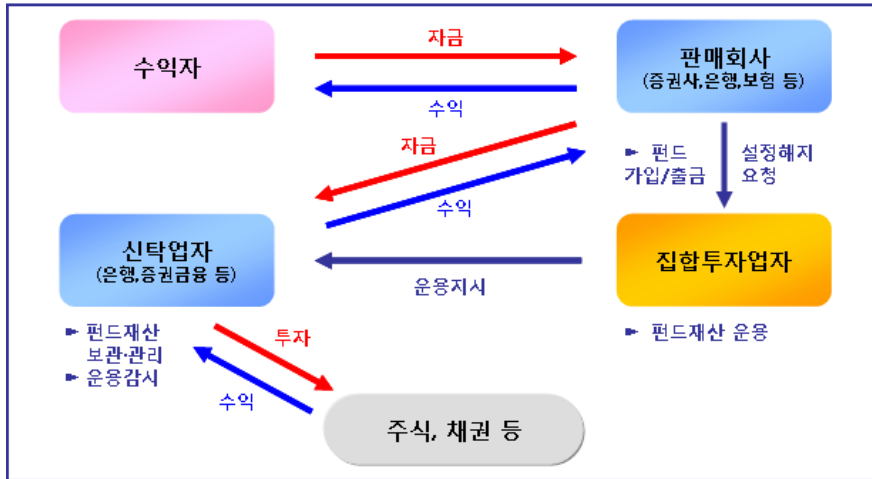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달러선물	677.5	100.0%
합계	677.5	100.0%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에탁결제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연락처: (02) 3774-3000)
인터넷홈페이지주소	www.ksd.or.kr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처리계획(해지, 합병,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관련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 경과시점에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장내·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am.com)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계약금액
 - 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파생형	법령상 운용규제에 따른 분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